

# 『인간과 평화』 출판 규정

제정 2020년 09월 01일

## 제1장 원고 접수

제1조 (원고의 접수) 원고의 접수와 그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원고 작성: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원고 작성요령에 따른다. 원고 작성요령은 별도로 정한다.
- ② 원고 접수: 원고는 수시 접수하며,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달한 때를 접수 시점으로 간주한다.

제2조 (원고의 제한) 『인간과 평화』에 투고하는 글은 다른 정기간행물 혹은 단행본을 통해 게재신청 또는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

## 제2장 원고 심사

제3조 (심사의뢰) 편집위원장은 호별 원고 접수 마감일 직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
- ① 심사 의뢰: 2인의 심사위원에게 원고 심사를 의뢰한다. 각 편집위원은 본인이 직접 심사하거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.
- ② 심사 기일: 초심 결과는 2주일 내 회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.
- ③ 판정 기준: 심사위원은 원고를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, 게재가, 수정 후 게재, 수정 후 재심,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.

제4조 (심사판정)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, 게재 가, 부분수정, 근본수정,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.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<초심판정표>에 따른다.

<초심판정표>

종합판정	심사위원1	심사위원2
게재 가	○	○
	○	△
수정 후 게재	○	▽
	○	×
	△	△

종합판정	심사위원1	심사위원2
수정 후 재심	△	▽
	△	×
	▽	▽
게재 불가	▽	×
	×	×

[게재 가(○), 부분수정(△), 근본수정(▽), 게재 불가(×)]

제5조 (수정 후 게재) '수정 후 게재'로 종합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.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초심평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
제6조 (수정 후 재심) 초심 결과, '수정 후 재심'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.

- ① '수정 후 재심' 판정을 받은 논문은 원고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.
- ② 원고 저자의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 2인은 원고 수정이 충분하고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심사한다. 그 중 최소 1명의 편집위원이 게재 가 판정을 내리면 게재가 확정된다.
- ③ 수정기간과 재심기간은 각각 1주 이내로 한다.
- ④ 재심은 원칙적으로 해당 호에 진행한다. 그러나 원고 저자가 기한 내 수정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재심절차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

제7조 (이의제기) 논문의 재심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원고 저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2주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와 함께 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심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.

제8조 (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)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그 사유와 함께 원고 저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. 그러나 최종 통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게재 신청할 수 있다.

### 제3장 편집 및 발간

제9조 (인쇄와 발간)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발간: 게재가 확정된 글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.
- ② 이월게재: 게재 확정을 받은 원고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할 수 있다.

제10조 (게재증명과 표절처리) 원고 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원고 저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된다.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연구윤

리 위반 행위가 드러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윤리위반 행위 심의 절차에 의해 게재불가 혹은 취소 처리한다.

제11조 (발간일정)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『인간과 평화』는 창간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고 연 2회 발간된다.
- ② 매년 1호 발간일은 3월 31일, 2호 발간일은 9월 30일로 한다.
- ③ 매년 1호 원고 접수 마감은 1월 31일, 2호 접수 마감은 7월 31일로 한다.

제12조 (기타 사항) 『인간과 평화』 발간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심의, 결정한다.